

제296회 정례회

2010.12.24 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24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문희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1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15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수농특산물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성

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4조)
- 폐지된 법령 삭제(안 제9조제1항제3호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민병완)

- '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함은 물론, 폐지된 법령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, 제2호, 제3호의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 각각 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라 함은”을 “란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

제9조제2항 중 “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규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제14조 중 “인정된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(이하 “농특산물”이라 한다.)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에 생산되는 농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으로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.)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증한 상품을 총칭한다.</p> <p>2. “농림수산물”이라 함은 농산물·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.</p> <p>3. “농산물가공품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에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가공식품 전 통식품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뜻은 -----.</p> <p>1. ----- -----이 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이란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이란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“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(이하 “도 품질인증마크”라 한다.)”라 함은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을 말하며 그 표시는 충청북도 이미지 통합 매뉴얼에 의한다.</p>	<p>4. ----- ----- -----란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[별표 1]의 상품류구분에 의거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대상품목) 도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「상표법」 제10조제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[별표 1]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9조(사용권 취소) ①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등 규정에 의한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</p>	<p>제9조(사용권 취소) ①현행과 같음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, 「산업표준화법」,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등 규정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 (생 략)</p> <p>②제1항의 <u>규정에 의하여</u> 사 용권이 취소되는 경우 도 품 질인증마크를 사용 할 수 없 으며, 이미 제작 유인된 상표 는 폐기·말소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 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임명한다.</p> <p>⑦(생 략)</p> <p>제14조(사무위임) 도지사는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· 군수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.</p>	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위원회 설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</p> <p>⑦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사무위임) ----- ----- <u>인정하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상표법

제10조(1상표 1출원)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.

□ 상표법 시행규칙

제6조(상품류구분등)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